



[시행 2020. 10. 20.] [법률 제17503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: 재산) 02-2110-3734, 3730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: 가족) 02-2110-4264, 3729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: 법인) 02-2110-3798, 3862

1113 ()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.

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.

[본조신설 1977. 12. 31.]

<제17503호, 2020. 10. 20.>

1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 (성적 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.